

2026. 8.

미국 법원, 앤트로픽 집단소송 합의 최종승인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심석찬 선임연구원

1. 개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0일, Andrea Bartz 등이 Anthropic PBC(이하 “앤트로픽”)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총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대해 최종 승인(order granting final approval of class action settlement)을 내렸다.¹⁾

본 사건은 AI 기업 앤트로픽이 AI 학습을 위해 서적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는 한편, Books3, LibGen, PiLiMi 등 불법 사이트에서 약 700만 권 이상의 서적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이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해 다양한 LLM 학습에 반복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²⁾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AI 모델의 학습 행위 자체(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및 학습을 위해 구매한 서적을 스캔하는 행위)는 원작의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앤트로픽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학습데이터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은 후속 법정 공방 진행과 함께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2. 앤트로픽 사건 합의 경과

당사자들은 제3자 중재를 통해 집단 전체 합의에 도달한 후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예비 승인과 최종 승인을 거쳐 소송이 종결되었다. 구체적인 경과와 다음과 같다.

- 제3자 중재인의 주재로 양측이 조정을 진행하여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합의(Class-wide settlement) 도달('25. 8. 19.)
- 구속력 있는 합의 요약서(binding term sheet)를 체결하여 법원에 합의 사실을 알리고 소송 절차 정지 및 모든 일정 취소 요청('25. 8. 26.)

1) Bartz et al v. Anthropic PBC, No. 4:2024cv05417 - Document 680 (N.D. Cal. 2026).

2) Bartz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WHA (N.D. Cal. 2025); 이대희, “앤트로픽 및 메타 케이스의 비교 분석”, 이슈 리포트 2025-3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9.) 참조.

- 합의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서(full-form settlement agreement) 마련 후, 합의 예비 승인 신청서(unopposed motion for preliminary approval of class settlement)를 법원에 제출('25. 9. 5.)
- 수정된 합의 예비 승인 신청서에 대해 예비 승인 허가('25. 9. 25.)
- 집단통지 및 이의 수렴('25. 11. 30.~'26. 2. 9.)
- 최종승인 심리(fairness hearing)('26. 5. 14.)
- 화해안에 대해 최종 승인 확정(order granting final approval of class action settlement)('26. 7. 20.)

〈표1. 엔트로픽 집단소송 세부 경과〉

일자	내용
2024.08.19.	소송 개시
2025.06.24.	공정이용 약식판결 선고
2025.07.17.	집단소송 인정
2025.08.19.	양측, 제3자 중재인 주재로 조정 참여
2025.08.26.	양측,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합의 요약서 제출 및 합의에 따른 재판 중단
2025.09.05.	집단소송 합의 예비 승인 신청서 법원 제출
2025.09.08.	합의안 예비 승인 1차 심리
2025.09.25.	수정 합의안 예비 승인
2025. 11. 30.~ 2026. 02. 09.	합의문 통지, 이의 및 옵트아웃 수렴
2026. 05. 14.	최종승인 심리
2026. 07. 20.	최종승인명령 및 종국판결선고

3. 합의의 주요 내용

엔트로픽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 불법 도서 활용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하고 불법 다운로드한 파일을 파기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대가로 저작물의 과거불법 취득 및 복제에 관한 청구권을 면제(release)하였다.

- 엔트로픽은 약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비환수형(non-reversionary) 기금을 조성
- 엔트로픽은 LibGen 또는 PiLiMi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파일 및 이로부터 파생된 모든 사본을 파기
- 집단소송 청구인들은 엔트로픽의 과거 AI 입력(input), 즉 저작물의 불법 취득·복제 행위에 관한 청구권을 면제(release)
- 다만, 합의의 효력은 AI 산출물(output)이나 '25. 8. 25. 이후의 장래 행위(future conduct)에 미치지 않음

4. 당사자 선정 및 통지

법원은 미국 연방민사절차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23조(e)(1)에 따라 최종승인을 결정하기 위해 합의의 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집단 구성원(class members)에게 승인된 합의안을 통지했다.

〈미국 연방민사절차규칙 제23조(e)(1)〉

(e) Settlement, Voluntary Dismissal, or Compromise.

(1) (A) The court must approve any settlement, voluntary dismissal, or compromise of the claims, issues, or defenses of a certified class.

(B) The court must direct notice in a reasonable manner to all class members who would be bound by a proposed settlement, voluntary dismissal, or compromise.

(C) The court may approve a settlement, voluntary dismissal, or compromise that would bind class members only after a hearing and on finding that the settlement, voluntary dismissal, or compromise is fair, reasonable, and adequate.

(e) 합의, 자발적 해고 또는 타협.

(1) (A) 법원은 인증된 집단의 청구, 문제 또는 방어에 대한 합의, 자발적 기각 또는 타협을 승인해야 한다.

(B) 법원은 제안된 합의, 자발적 소송 취하 또는 타협에 구속될 모든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C) 법원은 심리를 거쳐 합의, 자발적 소송 취하 또는 타협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집단소송 구성원을 구속하는 합의, 자발적 소송 취하 또는 타협을 승인할 수 있다.

- 이때 법원이 승인한 집단소송의 구성원은 앤트로픽이 LibGen이나 PiLiMi에서 다운로드하여 작품 목록(works list)에 등재한 저작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 도서관, ISBN 또는 ASIN을 보유하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으며, 앤트로픽의 다운로드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최초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저작물을 의미함
- 정산관리인은 협회, 출판사 등을 통해 권리자 명단을 확보하여, 총 594,945명에게 합의안을 우편·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였고, 업계지·대중매체·SNS 등을 통해 보충적 공지를 병행함
- 통지 결과 91.3%의 높은 청구율을 보였고 유효 옵트아웃은 약 350건(1,802개 저작물)에 그쳐,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집단 구성원들의 반응이 압도적으로 우호적(overwhelmingly favorable)"이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합의 승인의 근거 중 하나로 삼음

5. 법원의 적정성 평가

- **(합리성 판단)** 법원은 해당 합의안이 미국 연방민사절차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23조(e)(2)에서 규정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며,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적정하다(adequate)고 판단하였다.

〈미국 연방민사절차규칙 제23조(e)(2)〉

- (2) Approval of the Proposal. If the proposal would bind class members, the court may approve it only after a hearing and only on finding that it is fair, reasonable, and adequate after considering whether:
- (A) the class representatives and class counsel have adequately represented the class;
 - (B) the proposal was negotiated at arm's length;
 - (C) the relief provided for the class is adequate, taking into account:
 - (i) the costs, risks, and delay of trial and appeal;
 - (ii) the effectiveness of any proposed method of distributing relief to the class, including the method of processing class-member claims;
 - (iii) the terms of any proposed award of attorney's fees, including timing of payment; and
 - (iv) any agreement required to be identified under Rule 23(e)(3); and
 - (D) the proposal treats class members equitably relative to each other.
- (2) 제안 승인. 해당 제안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제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A) 집단 대표자 및 집단 변호인이 집단을 적절히 대변했는지;
 - (B) 제안이 제3자 간 거래 원칙에 따라 협상되었는지;
 - (C)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집단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구제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
 - (i) 재판 및 항소에 따른 비용, 위험 및 지연;
 - (ii) 집단 구성원 청구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 집단 구성원에게 구제 조치를 분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의 효과성;
 - (iii) 지급 시기를 포함하여 제안된 변호사 수임료 지급 조건; 및
 - (iv) 규칙 23(e)(3)에 따라 명시되어야 하는 모든 합의; 및
 - (D) 해당 제안이 집단 구성원들 간에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여부.

- 법원은 해당 합의는 대등한 당사자 간 독립적 교섭(arm's length)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하였고,
- 저작물당 평균 약 3,000달러로 추정되는 배상금은 통상 저작권 침해 사건의 법정손해배상 최저액(750달러)의 4배에 해당한다는 점,
- 재판으로 갈 경우 승소가 보장되지 않고, 패소 시 청구인들이 전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안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수준의 구제라고 판단함
- **(분배계획)**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저작물당 비례 배분(pro rata)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출판계약상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 합의안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기금이 남을 경우, 경제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잔여금을

집단 구성원에게 재분배하며, 최종 잔액은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사이프레스*(cy pres) 원칙에 따라 처리함

* 집단소송등에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이 기금을 원래 지정된 자선 목적에 최대한 가깝게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6. 시사점

해당 사건은 AI 개발사가 학습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대규모 금전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저작권 집단소송 사건으로 평균 배상액(\$3,000) 역시 Google Books 사건의 화해안에서 제시되었던 배상액에 비해 매우 큰 금액임

한편, AI 입력(학습용 복제)과 AI 출력(산출물)을 구분하여 산출물 및 향후 행위에 관한 청구권은 제한하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한 AI 학습데이터 관련 분쟁에서 주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대비 소수(약 350건, 1,802개 저작물)에 그친 옵트아웃 건수는, 법원이 이를 근거로 집단 구성원의 반응이 "압도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저작권자가 소송의 불확실성보다 확정적 화해금 수령을 선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 이대희,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의 비교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2025.9.).
- Bartz et al v. Anthropic PBC, No. 4:2024cv05417 – Document 680 (N.D. Cal. 2026).
- Bartz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WHA (N.D. Cal. 2025).
- Blake Brittain, US Judge Approves Anthropic's \$1.5 Billion Settlement of Copyright Lawsuit, Reuters (July 21, 2026), <https://www.reuters.com/world/us-judge-approves-anthropics-15-billion-settlement-copyright-lawsuit-2026-07-20/>.
- Notice of \$1.5 Billion Proposed Class Action Settlement Between Authors & Publishers and Anthropic PBC, Anthropic Copyright Settlement, <https://www.anthropiccopyrightsettlement.com/> (last visited July 30, 2026).